## 성 적 인 정 원

	학부(과)장
확	
인	

 학사운영규정 제18조(휴학자의 성적처리)
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수업80% (1학점 15시간 기준으로 12시간)

이상 참여한 휴학자의 성적은 중간시험과 수시시험, 출석 및
과제물 성적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학부(과)		전 공		
학 년	학년	학 번		
성 명		생년월일	입대일자	

성적인정 교과목 내역								
연번	교과목명	강의요일	강의시간	담당교수	담당교수 확인(인)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
상기 본인은 \_\_\_\_학년도 \_\_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휴학(예정)자로서, 중간시험과 수시시험, 출석 및 과제물 등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평가한다는 사항을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에게 지도 받았으며, 이에 성적인정원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학 생 ( 서 명 ) :

(1)

## 세명대학교 총장 귀하

## 일 자 접 수

- ▶ 유의사항
- 1. 작성 시 반드시 수강교과목별 담당교수님에게 성적인정 사항을 안내받고 서명을 받아야 함.
- 2. 출결사항 및 중간고사 성적으로 부여된 F등급도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됨.
- 3. 80%(1학점 15시간 기준 12시간)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과목은 출석미달에 의한 F등급 부여됨.
- 4. 이수중 인 교과목 모두를 기재하여야 하며, 신청에서 누락된 교과목도 포함하여 성적평가 됨.